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2조, 제8조, 제13조)

－ 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」

－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－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2 →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제10조의2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→ 제1항에 따른
- 진위여부 → 진위 여부
- 당해 → 해당
- 아니한다 → 않는다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. 끝.